

# 예산총칙

2022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22,238,076	15,667,142
일반회계	511,006,045	15,330,181
특별회계	11,232,031	336,961
기타특별회계	11,232,031	336,961
주차장운영특별회계	2,159,040	64,771
농공지구조성및관리특별회계	155,000	4,650
상계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75,610	2,268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413,342	12,400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1,076,544	32,296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545,823	136,375
드림빌특별회계	1,210,231	36,307
공영터미널운영및관리특별회계	88,279	2,648
건축진흥특별회계	205,000	6,150
공공실버주택특별회계	1,303,162	39,095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세, 교부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보고한다.(간주예산)